

義務保險下에서의 Coinsurance Clause에 對한 考察

吳炳泰

〈本協會 業務部・課長〉

目次

- I. 前提
- II. Coinsurance Clause
 - 가. 概要
 - 나. 目的
 - 다. 保險金 算出例
 - 라. 留意點
 - 마. 特殊建物의 時價 및 金融機關 關聯保險과의 關係
 - 바. 企業休止保險의 補償期間과 共同保險 條項
- III. 結論

I. 前提

우리 나라의 損害保險은 契約對象物件이 從來企業物件을 主軸으로 成長發展되어 왔으며, 企業保險分野는 大部分의 契約이 金融機關關係火災保險共同事務所(pool)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現在의 火協에 이어졌다. 오늘날 現代文明의 急速한 發展과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에 步調를 맞추어 保險事業도 놀라운 成長을 거두어 왔고,

이와 같은 急速한 發展과 成長에 따라 各種 세로운 危險이 突然 없이 수반되고 多種・多變化하게 되었으며, 많은 企業들은 危險管理의 必要性과 重要性을 再認識하고 그 機能을 強化하여 企業에 正式으로 特別한 部署(危險管理部나 保險部)를 設置하여 危險의 發見・分析評價 等의 危險에 對處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企業資產保護에 이르렀고, 保險者들도 各種危險을 效率的으로 擔保하기 위한 契約引受上의 技術的科學的인 面에 重大한 課題를 안게 되었다. 한편 火協은 安全點檢에 의한 危險의 事前豫防과 危險測定 및 保險引受技術을 갖추어 關係保險을 取扱함으로써 先導防災와 保險情報機關으로서 開發的機能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폭넓게 活用하여 保險業界의 保險引受의 資料 및 新로운 保險商品 개발과 特히 適正料率算定에 기여함으로써 保險契約者에게 適正・適宜하고 公正하며 지나치게 差別의 아닌 料率을 賦課하여 保險契約者の 利益을 保護할 使命을 또한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趣旨의 一環으로 우선 先進國의 企業財產保險에서一般的으로 많이 使用되고 있는 Co-insurance Clause(共同保險條項)를 考察하고자 한다.

II. Coinsurance Clause

가. 概 要

共同保險條項은 主로 財產保險(損害保險)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被保險者가 保險目的物 價額의 一定比率以上을 保險에 들고 事故時에 保險金額이 그 比率以上일 때에는 損害額 全額을 補償받고 事故時 保險金額이 그 比率未滿일 때는 比例補償을 받는 것이므로 一名付保比率條件附實損補償特別約款이라고도 한다. 例컨대 耐火構造나 防火區劃이 잘된 建物은 火災가 發生하더라도 大部分이 分損이지 全損될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에 被保險者は 建物價額 全額을 付保하면 保險料의 負擔이 過重하게 되어 全額付保를 꺼리게 되고 一部 保險으로 付保하게 되면 保險料의 負擔은 줄일 수 있으나 事故時에는 比例補償을 받게 되므로 充分한 실손補償을 期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保險者立場에서 보면 全損이 發生할 確率이 거의 없기 때문에 保險者가 負擔할 危險이 該當建物價額의 全額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므로 被保險者로 하여금 保險料 負擔을 輕減시켜 줄 必要가 있게 된다. 따라서 被保險者로 하여금 一定率(例 80%)에 해당하는 保險金額을 維持하게 함으로써 保險料負擔을 줄여 주고(例 10억에 대한 保險料 대신에 80%인 8억에 대한 保險料만 負擔함) 事故時에는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의 一定率에 해당하는 限 損害額을 比例補償하지 않고 보험금액을 한도로 全額補償하는 것이다.

나. 目 的

保險契約者로 하여금 財產價值와 比較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그 價值에 가깝거나 同一한 價格으로 保險金額을 決定하는 것을 執行하기 위함이다. 즉 保險目的物 價值와 保險金額과의 比率의 低下를 防止하고 保險金額의 強化를 의도하는 것이다. 長期貯蓄性 損害保險의 80%付保比

率條件附實損補償은 保險期間이 長期이므로 장래의 保險目的의 價額을 正確하게 豊知할 수 없기 때문에 契約當時에는 全部 保險이 있으나 物價變動으로 인하여 災害時에는 一部 保險이 되어 契約者가 아주 不利益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함이고, 住宅保險이나 家庭生活保險이 事故時에 一定率(住宅保險은 80%, 家庭生活保險은 60%)以上 保險金額이 保險價額을 維持할 때 保險金額을 限度로 하여 損害額의 全額을 補償함은 一部 保險에 대한 比例補償으로 인해 保險契約者의 保險에 대한 不信感을 갖고 無視하는 경우를 防止하고 保險의 底邊擴大 또는 保險料率의 間接的인 引下를 위함이라는 점에서 서로 相異하다.

다. 保險金 算出例

1억원의 價值가 있는 家屋에 대하여 保險契約者는 80%의 共同保險率을 指定하게 되면, 保險金額은 8천만원이고($100,000,000원 \times 80\%$) 事故後調査에 의하여 時價 1억원이라면 被保險者は 證券上에 表記된 保險金額 8천만원을 限度로 하여 損害額 全額을 補償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保險金額이 必要金額(Amount of insurance required)에 未達할 경우에는 比例補償을 받게 된다. 損害額이 1천만원일 경우의 保險金은 다음과 같다.

(1) 必要金額을 充足했을 때

$$10,000,000 \times \frac{80,000,000원}{100,000,000원 \times 80\%} = 10,000,000원(保險金)$$

(2) 必要金額을 未達했을 때

$$10,000,000 \times \frac{80,000,000원}{120,000,000원 \times 80\%} = 8,333,334원(保險金)$$

(3) 必要金額을 充足하고 全損 또는 損害額이 保險金額을 超過할 때

$$100,000,000 \times \frac{80,000,000원}{100,000,000원 \times 80\%} = 100,000,000원$$

但 80,000,000원限度

保険金額
즉 損害額 × 共同保険比率(%) × 罷災發生時價額
= 保險金
支給保險金은 損害額이나 付保金額을 超過할 수 없다.

라. 留意點

Coinsurance Clause는 어떤 損害額을 保險者와 被保險者가 分擔한다는 뜻이 아니고 該當共同保険率以上으로 付保率이 事故時に 維持되면 損害額全額을 保險者가 補償하되 該當共同保険率未滿으로 付保率이 떨어지면(Required Amount에 未達하는 것) 그 떨어진 付保率만큼만 比例로 補償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付保率이 떨어질 경우에만 被保險者は 比例補償을 받게 되므로 그 差額은 自己負擔이 되는 것이다(Under insurance Penalty).

結果的으로 泰만하고 不注意한 保險契約者에게 폐널티로써 責任이 賦課되는 것이다.

Coinsurance Clause는 生命保險이나 災害保險分野에서는 使用되지 않고 오로지 財產保險分野에서만 使用되며,一般的으로 共同保険比率이 높아질수록 保險料率이 낮아진다. 즉 共同保険比率이 80%인 경우는 60%인 경우에 비하여 保險料率이 낮다는 말이다.

契約者の 要請에 의하여 近間に 使用한 S社의 例를 들어보면,

80% Coinsurance Clause; 0.2475%

60% Coinsurance Clause; 0.27%이다.

한편 이 條項은 契約者の 善意라 해도 만약 超過付保하였다면 더 많은 保險料를 내게 되고 또 一部保險이라면 그의 補償額은 감소되기 때문에 一部財政의 損失없이 이 條項을 遵守하는 것이 어렵다는 短點도 留意하여야 한다.

마. 特殊建物의 時價 및 金融機關 關聯 保險과의 關係

(1) 火保法 第8條 第1項 第1號에 “火災保險

은 特殊建物의 時價에 該當하는 金額”이라 하여 特約付火災保險은 「保險金額=保險價額(時價)」로써 法上으로는 契約成立時에 超過保險(Over insurance) 또는 一部保險(Under insurance)은 있을 수 없고 全額保險(Full insurance)으로, 被保險者が 입은 經濟的 損失을 補償한다는 理想의 仁趣旨이다. 이에 따라 施行規則에 「特殊建物 時價決定基準額表」를 定하였고 工場의 機械設備 및 附帶裝置에 대한 評價方法은 「法人稅法 施行令의 規程에 의한 減價徵却을 하고 이에 都賣物價 上昇率을 參酌하여 算定한 金額을 時價로 한다」고 明文化하였다(施行規則 第2條 2第1項但書). 그러나 千態萬別한 建物 및 多種·多樣하고 複雜한 機械의 適正時價算出의 困難과 物價變動, 一定한 基準時點等으로 時價와 基準額表上 金額間의 差는 不可避할 것이고, 實際의 으로 지난 몇년간 基準額表의 補完이 없었으며 物價連動制의 採擇도 어려워, 罷災發生時에 比例補償이 不可避하게 되고 따라서 被保險者が 相當한 補償을 받지 못하게 되어 保險金 支給時마다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는 實情이다.

上記의 實情을 감안하여 基準額表에 의한 保險金額에 一定率의 Coinsurance Clause를 適用함은 一種의 間接的인 時價補填方法이며 罷災時에 實損補償에 의한 充分한 補償으로 被保險者の 好感과 同時に 本法趣旨에도 符合될 것이다.

(2) 「保險契約의 引受는 嚴格하게, 保險金 支給은 厚하게」라는 保險經營의 警句같이 被保險者が 保險事故時에 滿足할 수 있는 保險金을 支給받을 수 있도록, 理想의 損害補償을 期待하기 위해서는 契約引受時에 保險價額이 適正하게 評價되어 이에 相應하는 適切한 保險金額이 設定되어야 한다. 그러나 鑑定院이나 金融機關의 鑑定이 徵稅政策의 基礎나, 債權確保라는 金融業務上의 特性을 考慮한 것이기 때문에 保險價額의 評價資料로는 不充分하며, 火協의 金融關聯 高額物件에 대한 安全點檢을 實施하여 保險引受等 各種 保險資料를 活用하고 있으나 아직

未治한段階이고 특히 機械類는 그種類가 많고構造性能이複雜多岐하므로機械에 대한專門家가 아닌者가評價하기에는至難한實情이다. 이와같이保險價額評價方法의未定立과保險引受技術이未熟한現實에서하나의補完策으로一定率의Coinsurance Clause의適用은바람직하며事故發生時保險金支給問題로被保險者와의對立이나紛爭을 어느정도緩和시킬수있을것이다.

바.企業休止保險의補償期間과共同保險條項

企業休止保險은火災等一定한偶然의事故에의하여,企業經營이中止되거나沮害된結果로생긴損害中에서그事故發生이없었더라면計算될수있을營業利益과操業이中斷된期間동안에도繼續支拂해야하는經常費를補償하는一種의間接損害를補償하는保險이다.企業休止補償期間에는英國式·美國式方法이있다.

英國式에서는企業休止損害를一定한期間동안補償하는補償期間(Indemnity period)이있다.被保險者は事故發生時에그가經營하는企業을正常狀態로原狀復舊함에必要할것으로豫想되는補償期間을選擇해야하고,이補償期間은損害를당한財產의復舊와企業經營의收益을復舊하는兩面에所要되는期間이다.保險金額은Annual Gross Profit이고,補償期間이12個月을超過하는경우에는保險金額도12個月을超過하는期間만큼比例的으로增額된다.

美國式方法에서는英國式의補償期間이라는것은없고그代身共同保險條項에의하여共同保險率(Coinsurance percentage)에따라12個月間을補償한다.

美國式企業休止의補償期間은事故發生時點

부터迅速하게復舊하는 데에實際로所要되는期間이며,12個月間이라는約款上의表現은없으나通常12個月間으로解釋適用한다.

共同保險率은被保險者が全損의경우에事故後復舊하는 데에所要될期間을推定하여12個月에대한比率로決定하게되며,決定된共同保險率을Annual Gross Earnings에곱하여保險金額이策定되고事故時에는損害額이이保險金額에達할때까지補償을받게되며事實上50%Coinsurance일경우에는대략12個月의50%인6個月정도가경과되면保險金額에거의到達하게된다.그리나期間上으로는6個月이경과되더라도그동안에發生한損害額이保險金額에未達되면,損害額이保險金額에達할때까지補償하는것이다.

III.結論

保險을危險管理側面에서研究하려는傾向이뚜렷한요즈음火協은安全點檢에의한危險管리및保險情報機能을最大限利用하여先導防災에발맞추어先導保險의一翼을담당하여야할것이다.

이를위해危險管理課(危險選擇課)의設置가必要하며여기에서保險對象物인수많은危險을充分히檢討하고分析評價하여保險引受等各種保險資料로活用하고나아가保險業界에寄與하여야할것이며,獨占으로인한料率의硬直性을排除하기위하여,F.O.C(Foreign)料率과이에따른各種特約條項들을상세히研究檢討하여保險契約者の要望에適合하고適正한料率을賦課함이,保險契約者에대한서비스요,保險認識提高方案임은물론火協發展의진이라생각된다.*